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3 선고 2022가단100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박해생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1. 8. 2. 접수 제494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나. B은 C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보증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18. 8. 3.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2020. 5. 8. B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억 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여 위 은행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B은 2021. 8. 10.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21. 8. 21.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12. 16. C은행에게 합계 82,179,537원을 대위변제하고, 2021. 12. 14. 기업은행에 합계 100,636,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법정절차비용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94,710원이다.

마.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2. 21. 'B은 원고에게 182,911,233원 및 그 중 82,179,537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100,636,986원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2. 1. 11. 확정되었다.

바.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이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1. 8. 2.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1. 8. 2. 접수 제4946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사. B은 피고의 여동생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21. 12. 14. 및 2021. 12. 16.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그 전인 2018. 8. 3., 2020. 5. 8. 각 체결된 점,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여일만에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가) 채무자의 무자력

갑 5, 6, 9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1억 750만 원인데, 주식회사 D에 2018. 7. 30. 채권최고액 8,25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③ B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10여일만에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것이 B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피고의 동생의 배우자로서, 비교적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에게 2021. 6. 5. 4,000만 원을 2021. 7. 5.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 무렵 B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실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성종

별지